

돌봄기본법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78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정춘생 · 박은정 · 서왕진
김재원 · 차규근 · 황운하
김선민 · 강경숙 · 이해민
신장식 · 김준형 · 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겪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이자 보편적인 삶의 모습임. 인간의 이러한 취약성과 의존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유대의 출발점임. 따라서 돌봄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의 전제조건이자 지향해야할 가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간 성장주의적 발전전략과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 정책을 우선시하며, 돌봄의 가치를 사적 영역에 방치하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해옴. 특히 돌봄노동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면서, 돌봄은 공공적 가치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음.

현행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상황을 중심으로 개별 돌봄서비스를 규율하고 있으나, 돌봄의 보편성 · 통합성 · 공공성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한 복지서비스나 경제활동의 한 형태로 한정하는 인식을 벗어나, 인간 존엄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가치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며,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공공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의롭고 신뢰받는 돌봄사회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제공기관을 설치·운

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돌봄의 공공성·보편성을 확보하고 통합 돌봄체계를 정착시키며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고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책임의 민주적인 분담과 돌봄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돌봄의 관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돌봄청장은 돌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돌봄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돌봄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3년마다 돌봄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국가의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청장이 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의 돌봄 정도를 지수화한 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카.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함(안 제28조).

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청장이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돌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돌봄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돌봄이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엄의 시작이자 생활의 기반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존립과 정의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임을 표명하며,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 좋은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상호 의존이 가능한 바람직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모든 인간이 사회에서 생존·발달·기능할 수 있도록, 생애 전반에 걸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에 따른 필요를 충족하고, 기초 역량을 발달·유지하기 위해 수반되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활동 등을 말한다.
2. “비공식 돌봄”이란 가족, 동거인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돌봄을 말한다.

3. “돌봄당사자”란 비공식 돌봄을 포함하여 제1호의 활동을 제공하거나 활동의 수혜받는 자 모두를 말한다.
4. “돌봄노동자”란 제1호의 활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하는 돌봄 제공 사업 플랫폼을 통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5. “돌봄서비스”란 제4호의 돌봄노동자가 제공하는 돌봄을 말한다.
6. “돌봄제공기관”이란 제4호의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돌봄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7. “이용자”란 제4호의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8. “돌봄권”이란 모든 사람이 돌봄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본권으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

나. 일과 돌봄, 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제반 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삶에서 유의미한 돌봄 관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을 돌볼 권리

제4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성별, 연령, 환경, 종교, 가족 형태, 거주 지

역, 장애 여부, 건강상태, 임신 여부 등을 이유로 돌봄권을 보장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공적 체계를 통해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보호·진흥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서로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여 돌봄을 주고받아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협력을 통해 돌봄의 공적 가치를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돌봄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돌봄정책의 기본방향

제8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돌봄관계를 성립·유지하고 인간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인 돌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돌봄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공식 돌봄을 행하는 사람(이하 “비공식 돌봄제공자”라 한다)·비공식 돌봄을 받는 사람(이하 “비공식 돌봄수혜자”라 한다), 돌봄제공기관·돌봄노동자·이용자·이용자 가족 등 돌봄당사자 및 돌봄유관자 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9조(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안정적인 공적 공급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와 돌봄제공기관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의 보편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격차 없이 돌봄을 누릴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돌봄에 따르는 차별 및 불이익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거나 돌봄책임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돌봄의 가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보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공식 돌봄 인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등에서의 비공식 돌봄제공자가 사회경제적 안정 속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등에서의 비공식적 돌봄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돌봄노동자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연적인 돌봄당사자로서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종교 등에 무관하게 돌봄책임이 격차 없이 분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돌봄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공식 돌봄을 포함해 돌봄당사자가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돌봄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이전될 생활환경을 돌보고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돌봄의 관계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관계를 보호하고 진작하여 돌봄당사자의 돌봄당사자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립

을 예방하고 신뢰 및 연대의 저변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9조(돌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돌봄청장은 돌봄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돌봄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돌봄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돌봄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돌봄지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24조에 따른 돌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돌봄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돌봄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돌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청장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돌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봄청장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돌봄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실태조사) ① 돌봄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돌봄당사자의 규모 및 현황
2. 돌봄이용자의 규모, 돌봄의 내용 및 새로운 돌봄 필요 등에 관한 사항
3. 돌봄제공기관의 분포, 규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노동자의 규모, 노동조건, 처우 및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
5. 비공식 돌봄 현황, 비공식 돌봄제공자 및 비공식 돌봄수혜자의 분포, 비공식 돌봄 시간, 비공식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 정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정책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돌봄청장은 국민이 돌봄정책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돌봄지수 등) ① 돌봄청장은 국가의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의 수요와 공급, 돌봄노동자의 처우·복지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정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공적 돌봄체계와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돌봄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공적 돌봄체계와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돌봄청장은 돌봄지수 및 지역돌봄지수 조사 결과, 돌봄권 보장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돌봄청장은 돌봄지표 및 지역돌봄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돌봄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돌봄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돌봄위원회) ①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돌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돌봄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돌봄 관련 법령 개선 사항
6. 아동, 교육, 노동, 건강 등 분야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
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
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돌봄청장과 제4항의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5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돌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국회에 대한 보고)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돌봄기금

제28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돌봄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④ 돌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돌봄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 제36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0조(기금의 운영) 기금의 수입과 지출, 회계기관 선임 등 운용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돌봄청장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비공식 돌봄제공자·비공식 돌봄수혜자·돌봄노동자·돌봄제공기관·이용자 및 돌봄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

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민간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5조(돌봄의 날) ① 돌봄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돌봄권 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여, 돌봄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돌봄 주간으로

지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7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돌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